

의안번호	2217574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6. 10. 08.
추 계 번호	26A1507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제4항 (세제 및 자금지원)	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는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. 다만,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-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-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※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특례 존속기한 연장 : (현행) 2028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33년 12월 31일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제4항(세제 및 자금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 주요입주기업¹⁾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의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임

○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과 주요입주기업은 2024년 12월 기준 각각 8,590개, 2,337개임

[표 1]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현황

(단위: 개)

경제자유구역	입주기업	주요입주기업			
		입주외국인 투자기업	입주국내복귀 기업	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	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
인천	3,860	367	—	81	454
부산진해	2,442	217	1	19	484
광양만권	739	55	—	1	143
경기	55	3	—	17	13
대구경북	1,052	29	—	6	286
강원	5	—	—	—	2
충북	166	13	—	23	66
전남광주	62	—	—	—	16
울산	209	6	—	1	34
합계	8,590	690	1	148	1,498

주: 위 현황은 2025년 산업통상부에서 실시한 ‘2024년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’ 결과임
자료: 산업통상부

1) 제16조(세제 및 자금지원)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(제3호·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. 이하 “주요입주기업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,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·교육시설·연구시설·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입주외국인투자기업
2. 입주국내복귀기업
3.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
4.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

- 개정안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주요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향후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을 받을 주요입주기업의 수와 감면 금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수입 감소액 산출이 불가능함
 - 참고로, 현재 경제자유구역 주요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시·도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하여 적용
 - ※ [참고자료] 경제자유구역 주요입주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 항목 및 대상, 감면율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노종우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노종우	02-6788-4675	namsan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경제자유구역 주요입주기업의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
감면 항목 및 대상, 감면율

경제 자유 구역	항목	감면율	대상
인천	임대료 감면	100% 감면	▶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▶ 외투금액(외국자본투자금액) 2,000만불 이상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%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100% 수출사업
		75% 감면	▶ 외투금액 1,000만불 이상 ~ 2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~ 3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% 이상 ~ 100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75% 이상 ~ 100% 미만 수출사업
		50% 감면	▶ 외투금액 500만불 이상 ~ 1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 ~ 2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% 이상 ~ 75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~ 75% 미만 수출사업
부산진 해	임대료 감면	100% 감면	▶ 외투기업(신성장동력산업기술) 외투금액 100만불 이상 ▶ 외투기업(제조업, 소재부품단지입주기업) 외투금액 500만불 이상 ▶ 외투기업(제조업) 외투금액 250만불 이상,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
		90% 감면	▶ 외투기업(제조업) 외투금액 250만불 이상,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~ 200명 미만
		75% 감면	▶ 외투기업(제조업) 외투금액 500만불 이상 ▶ 외투기업(제조업) 외투금액 250만불 이상,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~ 150명 미만
광양만 권	임대료 감면	100% 감면	▶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▶ 외투금액 2,000만불 이상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%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100% 수출사업 ▶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사업
		75% 감면	▶ 외투금액 1,000만불 이상 ~ 2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~ 3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% 이상 ~ 100% 미만 조달사업

경제자유구역	항목	감면율	대상
			▶ 전체생산량의 75% 이상 ~ 100% 미만 수출사업 ▶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~ 200억 원 미만인 사업
		50% 감면	▶ 외투금액 500만불 이상 ~ 1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 ~ 2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% 이상 ~ 75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~ 75% 미만 수출사업 ▶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~ 100억 원 미만인 사업
경기	없음	—	—
대구경북	임대료 감면	100% 감면	▶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▶ 외투금액 2,000만불 이상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%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100% 수출사업
		75% 감면	▶ 외투금액 1,000만불 이상 ~ 2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~ 3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% 이상 ~ 100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75% 이상 ~ 100% 미만 수출사업
		50% 감면	▶ 외투금액 500만불 이상 ~ 1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 ~ 2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% 이상 ~ 75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~ 75% 미만 수출사업
강원	임대료 감면	100% 감면	▶ 외투금액 100만불 이상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%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100% 수출사업
		75% 감면	▶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~ 3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% 이상 ~ 100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75% 이상 ~ 100% 미만 수출사업
		50% 감면	▶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 ~ 2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% 이상 ~ 75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~ 75% 미만 수출사업
충북	임대료 감면	100% 감면	▶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▶ 외투금액 2,000만불 이상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

경제 자유 구역	항목	감면율	대상
			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%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100% 수출사업
		75% 감면	▶ 외투금액 1,000만불 이상 ~ 2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~ 3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% 이상 ~ 100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75% 이상 ~ 100% 미만 수출사업
		50% 감면	▶ 외투금액 500만불 이상 ~ 1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 ~ 2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% 이상 ~ 75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~ 75% 미만 수출사업
전남광 주	임대료 감면	100% 감면	▶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▶ 외투금액 2,000만불 이상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%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100% 수출사업 ▶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사업
		75% 감면	▶ 외투금액 1,000만불 이상 ~ 2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~ 3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% 이상 ~ 100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75% 이상 ~ 100% 미만 수출사업 ▶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~ 200억 원 미만인 사업
		50% 감면	▶ 외투금액 500만불 이상 ~ 1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 ~ 2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% 이상 ~ 75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~ 75% 미만 수출사업 ▶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~ 100억 원 미만인 사업
울산	임대료 감면	100% 감면	▶ 100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▶ 외투금액 2,000만불 이상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%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100% 수출사업
		75% 감면	▶ 외투금액 1,000만불 이상 ~ 2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~ 300명 미만

경제자유구역	항목	감면율	대상
			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% 이상 ~ 100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75% 이상 ~ 100% 미만 수출사업
		50% 감면	▶ 외투금액 500만불 이상 ~ 1,000만불 미만 ▶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 ~ 200명 미만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수출,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% 이상 ~ 75% 미만 조달사업 ▶ 전체생산량의 50% 이상 ~ 75% 미만 수출사업

주: 주요입주기업이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입주외국인투자기업, 입주국내복귀기업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,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의미
 자료: 산업통상부, 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조례